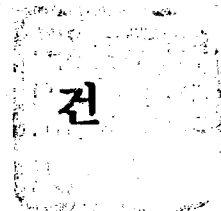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하수도과정사무처리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관련규정의 개정(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의 수도조례시행규칙에의 통합) 및 통합공과금제도의 폐지에 맞도록 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관련용어, 인용조문 등 정비

- (1) 통합공과금 검침부 → 하수도사용량검침부
- (2) 통합공과금 검침원 → 검침원
- (3) 서울특별시지정전산기관 →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부서
- (4)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 수도조례시행규칙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하수도조례 제15조

제15조(사용료)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배출수중에서 오수로 볼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는 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중 “통합공과금”을 각각 “하수도사용량”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통합공과금 검침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을 “검침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단서중 “구청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서울특별시 지정 전산기관(이하 “전산기관”이라 한다)”를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동장(공과금주임)”을 “담당계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동장(공과금주임)”을 “담당계장”으로, “구청장에게 통보”을 “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에게 보고”로 하며, 같은조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담당계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하수도사용량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점검 결과 정정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요금과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량 점검결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자의 신규발생과 기존 사용자에 대한 변경사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량 정정결과를 지체없이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료등을 통보받은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부서는 그 자료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산처리부서로부터 자료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수도사업소장은 지체없이 관계자료(관할구청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제6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련자료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조정종합집계표를 작성하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하수과장”을 “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라목중 “관할동사무소로”를 “수도사업소장에게”로 한다.

제39조중 “서울특별시상수도과정사무처리규정”을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제6조(통합공과금검침부) ①통합공과금검침부(이하“검침부”라 한다)는 하수도번호 대장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하수도사용량) ①하수도사용량</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하수도사용량) ①하수도사용량</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하수도사용량) ①하수도사용량</p> <p>② (현행과 같음)</p>	<p>통합공과금제도 폐지</p>	<p>통합공과금제도 폐지</p>
<p>제7조(비치용카드) ① (생략)</p> <p>②통합공과금 검침원(이하“검침원”이라 한다)이 하수도사용량을 점검하였을 때에는 검침부와 사용자 비치용카드에 점검내용을 동시에 기록하여야 한다.</p>	<p>제7조(비치용카드) ① (현행과 같음)</p> <p>②검침원</p>	<p>제7조(비치용카드) ① (현행과 같음)</p> <p>②검침원</p>	<p>제7조(비치용카드) ① (현행과 같음)</p> <p>②검침원</p>	<p>통합공과금제도 폐지</p>	<p>통합공과금제도 폐지</p>
<p>제9조(점검일) ① (생략)</p> <p>②사실상수도 사용자에게 대한 점검일은 사실상수도 공급업자의 점검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점검일을 정할수 있다.</p>	<p>제9조(점검일)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제9조(점검일)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제9조(점검일)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style="text-align: right;">수도사업소장</p>	<p>기 업무이관(수도사업소)</p>	<p>기 업무이관(수도사업소)</p>
<p>제12조(감량결정) ① (생략)</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감량대장에 의하여 감량입력 자료(전산서식)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지정전산기관(이하“전산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감량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제12조(감량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제12조(감량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style="text-align: right;">수도사업소장</p>	<p>수도사업소에서 사용량 전산입력 함.</p>	<p>수도사업소에서 사용량 전산입력 함.</p>

현행	개정(안)	사유
<p>제13조(조정 및 전산처리) ① (생략)</p> <p>②검침원은 하수도사용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동장(공과금주입)에게 제출한다.</p> <p>③동장(공과금주입)은 하수도사용자가 신규로 발생 또는 기존 하수도사용자의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변경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동장(공과금주입)은 제2항의 하수도사용량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점검일로부터 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점검을 한다. 이 경우 재점검결과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의 변경처리 및 제4항에 의한 정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전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⑥점검 및 정정결과를 통보받은 전산기관에서는 통합공과금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 및 하수도</p>	<p>제13조(조정 및 전산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담당계장</u> ----- ③<u>담당계장</u> ----- ----- -----수도사업소장에게 <u>보고</u> -----</p> <p>④<u>담당계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하수도사용량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있으며, 재점검결과 정정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요금과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정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⑤<u>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량 점검결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자의 신규발생과 기존 사용자에 대한 변경사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량정정결과를 지체없이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⑥<u>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료 등을 통보받은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부서는</u></p>	<p>수도사업소로 기 업무 이관(통합공과금제도 폐지)</p>

현행	개정(안)	사유
<p>사용료와 관련한 자료를 납기개시 10일전까지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구청장은 제6항에 통보받은 고지서 및 관련자료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조정종합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6조(고지서작성송달등) ①고지서는 하수과장 책임하에 관리하되 매일 소요매수를 불출하여야 한다.</p> <p>제37조(계측기관리) (생략)</p> <p>1. (생략)</p> <p>가. ~ 나. (생략)</p> <p>2. (생략)</p> <p>가. ~ 다. (생략)</p> <p>라. (병)지에 의거 대장을 정리한후 (갑)지와 (병)지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보관하되 그 내용을 관할동사무소로 통보</p> <p>제39조(타조례의 적용)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하여 이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상수도과장사무처리규정, 공업용수급수조례 및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그자료를 처리하고 그처리결과를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산처리부서로부터 자료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수도사업소장은 자체없이 관계자료(관할구청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구청장은 제6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련자료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조정종합집계표를 작성하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고지서작성송달등) ① ——— 수도사업소장 (요금과장) ———</p> <p>제37조(계측기관리)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p> <p>————— 수도사업소장에게 ———</p> <p>제39조(타조례의 적용) ———</p> <p>—————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p> <p>—————</p>	<p>수도사업소로 기업무 이관 (통합공과금제도 폐지)</p> <p>수도사업소로 기업무 이관 (통합공과금제도 폐지)</p> <p>수도조례에 의한 용어의 변경</p>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02)3707-9915~6 /전송3707-9929
 처리부서 : 하수행정과(서소문별관1동1층) 과장 정재완 계장 허용희 담당자 김창수

문서번호 하행58452-849
 시행일자 98. 7. 16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선결	법무담당관 김창수	지시	
접수	일자	결재	법제계장 차기
	시간		
번호	2008	공	람
	처리과		
담당자	김창수		

제목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개정안 발령의뢰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제805호)중 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 개정규정안 1부. 끝.

하 수 행정 과 장 정 재 완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3707-9916 / 전송 3707-9929

처리부서 : 하수행정과(서소문별관 1동 6층) 담당 김 창수

XX

문서번호 하행 58452-

시행일자 98. 6.

(경유)

수신 내부 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 존			
부시장	전결		김 창수
하수국장	<i>김창수</i>		
하수행정과장	<i>김창수</i>		법무담당관 심사필
기안	허용외결		



제목 서울특별시하수도과정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개정

000334

○ 우리시 하수도과정사무처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제805호)을 상수도과정사무
처리규정의 수도조례시행규칙에의 통합에 따라 사무처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하수도과정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제 19986호	제 19986호	제 19986호
합	합	합
합	합	합

1. 개정이유

관련규정의 개정(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의 수도조례시행규칙에의 통합) 및 통합공과금제도의 폐지에 맞도록 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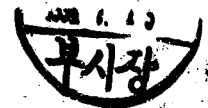
2. 주요골자

가. 관련용어, 인용조문 등 정비

- (1) 통합공과금 검침부 → 하수도사용량검침부
- (2) 통합공과금 검침원 → 검침원
- (3) 서울특별시지정전산기관 →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부서
- (4)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 수도조례시행규칙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하수도조례 제15조



제15조(사용료)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배출수중에서 오수로 볼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는 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중 “통합공과금”을 각각 “하수도사용량”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통합공과금 검침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을 “검침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단서중 “구청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서울특별시 지정 전산기관(이하 “전산기관”이라 한다)”를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동장(공과금주임)”을 “담당계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동장(공과금주임)”을 “담당계장”으로, “구청장에게 통보”을 “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에게 보고”로 하며, 같은조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담당계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하수도사용량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점검 결과 정정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요금과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량 점검결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자의 신규발생과 기존 사용자에 대한 변경사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량 정정결과를 지체없이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료등을 통보받은 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부서는 그 자료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산처리부서로부터 자료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수도사업소장은 지체없이 관계자료(관할구청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제6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련자료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조정종합집계표를 작성하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하수과장”을 “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라목중 “관할동사무소로”를 “수도사업소장에게”로 한다.

제39조중 “서울특별시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을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1981. 1. 15
부시장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